
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7.

발 의 자 : 김선교 · 김상훈 · 김위상  
정동만 · 최수진 · 김성원  
윤상현 · 최보운 · 구자근  
김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,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음.

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제3항제1호).



법률 제 호

##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3항제1호 중 “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”을 “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